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)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규제의 재검토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]

생태계교란 생물

1. 공통 적용기준

가. 포유류, 양서류 · 파충류, 어류, 갑각류, 곤충류: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.

나. 식물: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(종자, 구근, 인경, 주아, 덩이줄기, 뿌리) 및 표본을 포함한다.

다. 본 목록상의 약어 "spp."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.

2. 생태계교란 생물

구 분	종 명	비고
포유류	가. 뉴트리아 *Myocastor coypus*	
양서류 · 파충류	가. 황소개구리 *Lithobates catesbeianus*	
	나. 붉은귀거북속 전종 *Trachemys* spp.	
	다. 리버쿠터 *Pseudemys concinna*	
	라. 중국줄무늬목거북 *Mauremys sinensis*	
	마. 악어거북 *Macrochelys temminckii*	
	바. 플로리다붉은배거북 *Pseudemys nelsoni*	
	사. 늑대거북 *Chelydra serpentina*	
어류	가. 블루길 *Lepomis macrochirus*	
	나. 배스 *Micropterus salmoides*	
	다. 브라운송어 *Salmo trutta*	
갑각류	가. 미국가재 *Procambarus clarkii*	
곤충류	가. 꽃매미 *Lycorma delicatula*	
	나. 붉은불개미 *Solenopsis invicta*	
	다. 등검은말벌 *Vespa velutina nigrithorax*	
	라. 갈색날개매미충 *Ricania sublimata*	
	마. 미국선녀벌레 *Metcalfa pruinosa*	
	바. 아르헨티나개미 *Linepithema humile*	
	사. 긴다리비틀개미 *Anoplolepis gracilipes*	
	아. 빗살무늬미주메뚜기 *Melanoplus differentialis*	

구 분	종 명	비고
	자. 열대불개미 *Solenopsis geminata*	
	차. 열대긴수염개미 *Paratrechina longicornis*	신규
식 물	가. 돼지풀 *Ambrosia artemisiifolia*	
	나. 단풍잎돼지풀 *Ambrosia trifida*	
	다. 서양등골나물 *Ageratina altissima*	
	라. 털물참새피 *Paspalum distichum* var. *indutum*	
	마. 물참새피 *Paspalum distichum*	
	바. 도깨비가지 *Solanum carolinense*	
	사. 애기수영 *Rumex acetosella*	
	아. 가시박 *Sicyos angulatus*	
	자. 서양금혼초 *Hypochaeris radicata*	
	차. 미국쑥부쟁이 *Aster pilosus*	
	카. 양미역취 *Solidago altissima*	
	타. 가시상추 *Lactuca scariola*	
	파. 갯줄풀 *Spartina alterniflora*	
	하. 영국갯끈풀 *Spartina anglica*	
	거. 환삼덩굴 *Humulus japonicus*	
	너. 마늘냉이 *Alliaria petiolata*	
	더. 돼지풀아재비 *Parthenium hysterophorus*	
	러. 물여뀌바늘 *Ludwigia peploides*	신규